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가맹점 영업 개시 후 가맹금 예치의무 면제>

■ 김종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270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종민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2. 16.
- (3) 회 부 일 : 2025. 12. 17.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가맹본부가 부도나 계약 불이행 등의 사유로 개점을 하지 못할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가맹금 예치 전에 가맹점이 개설된 경우 가맹점 개설 불이행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가맹금 예치 의무가 여전히 부과되고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인 가맹점 개설 전 단계에서의 피해 예방과 어긋날 뿐 아니라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불필요한 행정적 갈등과 자금 집행 지연까지 초래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나 예치가맹금 예치 시점에 이미 가맹점이 개설되어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가맹금 예치 의무를 면제하도록 개선하고자 함(안 제6조의 5).

###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가맹금 예치 의무 면제 대상에 예치가맹금 예치 시점에 이미 가맹점이 개설되어 영업을 개시한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안 제6조의5제1항).

| 현행                                                                                                                                                                                                                                                                                                                                                              | 개정안                                                                                                                                                                                                                                                                                                                                                                                   |
|-----------------------------------------------------------------------------------------------------------------------------------------------------------------------------------------------------------------------------------------------------------------------------------------------------------------------------------------------------------------|---------------------------------------------------------------------------------------------------------------------------------------------------------------------------------------------------------------------------------------------------------------------------------------------------------------------------------------------------------------------------------------|
| <p>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u>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 <p>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u>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1. <u>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u></p> <p>2. <u>가맹점사업자의 예치가맹금</u></p> |

| 현행         | 개정안                                                                   |
|------------|-----------------------------------------------------------------------|
| ② ~ ⑧ (생략) | <p><u>예치 시점에 이미 해당 가맹점이 개설되어 영업을 개시한 경우</u></p> <p>② ~ ⑧ (현행과 같음)</p> |

□ 가맹금 예치제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영업지원 능력이 부족하거나 사기로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개설 전에 지급하는 가맹금의 안전성을 담보하기가 곤란하므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원받고, 사기거래의 위험도 방지하기 위하여 2007년 도입된 제도임.

○ 현행법 제6조의5<sup>1)</sup>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함)가 가입비,

- 1)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제3항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 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작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라.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계약이행보증금 등의 가맹금(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함)을 가맹본부에 바로 지급하지 않고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sup>2)</sup>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 예치가맹금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가맹본부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면 예치기관의 장이 10일 이내에 가맹본

②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2.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가맹점사업자가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을 예치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가맹본부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예치기관의 장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나 그 밖의 분쟁해결의 결과(이하 “분쟁조정 등의 결과”라 한다) 또는 제33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이, 시정조치나 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각각 확정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까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하여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가맹본부에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2.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3. 가맹점사업자가 제10조의 위반을 이유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4. 가맹본부가 제4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 ⑥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⑦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예치가맹금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가맹금의 예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부에 지급하여야 함<sup>3)</sup>.

□ 개정안은 예치가맹금 예치 시점에 이미 해당 가맹점이 개설되어  
영업을 개시한 경우를 가맹금 예치 의무 면제 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 개시 후 예치가맹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는 가맹점사업자가 그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한 후  
수령하여야 하는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예치 절차 없이 가맹본  
부가 직접 가맹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가맹점 개설 전 가맹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예치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현행법 규정을 감안하면, 개  
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다만, 현행법은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으로 예치가맹금의 예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내용이 계약서의 기  
재사항에도 반영되도록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3) 가맹본부는 예치가맹금 지급 요청서와 함께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나 가맹점사업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하여야 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10(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 ① 가맹본부는 법 제6조의5제3항에 따라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예치가맹금 지급(반환) 요청서(이하 “가맹금지급요청서”라 한다)를 예  
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의5제3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가맹점사업자가 영  
업을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현행법 제11조제2항 내용＞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②가맹계약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에 관한 사항
12.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할 경우 그 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임대차 등의 종류 및 공급 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개정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금 예치제도의 취지, 예치 가맹금 지급 사유를 고려할 때 가맹점 영업 개시 시 예치의무를 면제할 필요성에 동의하나, 예치가맹금 지급 사유로 규정된 법 문언을 고려하여 일부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sup>4)</sup>.

4) (개정안) 가맹점사업자의 예치가맹금 예치 시점에 이미 해당 가맹점이 개설되어 영업을 개시한 경우  
→ (수정의견) 가맹점사업자의 예치가맹금 예치 시점에 이미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한 경우

|       |
|-------|
| 문 의 처 |
|-------|

|              |
|--------------|
| 02)6788-5114 |
|--------------|